

2024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제도

(Re-Startup Support)





2024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제도

01 재창업 지원

1. 재창업 지원

1. 재도전종합지원센터	06
2.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제도	08
3. 재창업자금	10
4. 재도전 성공패키지	12
5. 신용보증기금 재기보증	14
6. 기술보증기금 재기보증	15
7.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16
8. 재도전기업 계약이행 보증보험 지원	19
9. 경기도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사업	20
10. 광주 창업 재도전 지원사업	22
11. 부산시 재창업 지원사업	23

2. 개인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1. 신용회복 절차	26
2. 개인 채무조정 비교	28
3. 개인 워크아웃	29
4.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31
5. 개인 회생 제도	33
6. 개인 파산, 면책 제도	36
7.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38

3. 조세, 신용정보 제도 지원

1. 재기중소기업인 조세지원	42
2. 신용정보 불이익해소	45



CONTENTS



경영위기 지원

1.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지원

1. 구조개선전용자금	48
2.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50
3. 한국자산관리공사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52
4. 캄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Sale&Lease-back)	53
5. 중소기업 진로제시 컨설팅	55
6. 중소기업 워크아웃	57
7. 워크아웃 컨설팅	59
8. 기업회생 제도	60
9. 중소기업 간이회생 제도	63
10.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64

2. 중소기업 사업정리

1. 중소기업 사업정리	68
2. 사업정리 유의사항	72
3. 사업정리 컨설팅	74
4. 법인가업 파산 제도	75
5. 중소벤처기업 자산거래 중개장터	77

2024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제도

(Re-Startup Support)

Part1

재창업 지원

1. 재창업 지원

1. 재도전종합지원센터
2.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제도
3. 재창업자금
4. 재도전 성공패키지
5. 신용보증기금 재기보증
6. 기술보증기금 재기보증
7.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8. 재도전기업 계약이행 보증보험 지원
9. 경기도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사업
10. 광주 창업 재도전 지원사업
11. 부산시 재창업 지원사업



01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경영위기 기업 및 재창업 기업의 재도전 종합 상담 및 지원 창구로
상담, 회생, 재창업·구조개선 자금 융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

”

지원대상

-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사업실패 후 재기를 준비 또는 진행하고 있는 재도전 기업

지원대상

- 법률, 세무, 신용회복 상담 및 재창업·구조개선 자금 융자 지원
- 사업정리 지원
- 기업, 개인회생 지원 상담

지원대상

-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지역센터 및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 문의)

지역	전화번호	주소지
서울	02-2106-7458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가산동) 가산W센터 4층
서울동남부	02-2023-4336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서초동) VR빌딩 1층
인천	032-837-7033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송도동), 갯벌타워 14층
경기	031-260-4971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경기북부	031-920-6711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백석동)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대전	042-281-3755	대전 서구 청사로 136(월평동) 대전무역회관 15층
세종	042-281-3705	세종 한누리대로 320(나성동), 리치먼드시티 2층
충남	041-589-458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충북	043-230-681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강원	033-269-6912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 빌딩 5층
전북	063-210-994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광주	062-600-3024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84(차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전남	061-280-8033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남익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제주	064-754-5156	제주 제주시 연삼로473(이도이동)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대구	053-606-8422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산격동)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경북	054-440-5917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경제진흥원 5층
울산	052-703-1139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부산	051-630-7404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감전동) 보생빌딩 A동 1층
경남	055-270-9767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기관소개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소개



설립목적

- 위기기업의 경영애로 극복과 원활한 재도전 지원을 위해 일반기업과 차별화된 재도전 기업인 눈높이에 맞는 전담지원 체계 구축

주요 업무

- 경영위기 기업 및 재도전기업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상담을 통한 해결방안 제시

심층상담

- 경영위기 기업
 - 세무·회계 및 노무상담, 상사 및 법률분쟁, 기업 M&A 등 각종 지원시책 안내 등 (필요시 진로제시·회생 컨설팅 연계지원)
 -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고 있거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중 회생 유망기업을 선별하여,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
 - 폐업부담 최소화를 위한 폐업신고 대행 등 사업정리 지원
- 재도전기업인
 - 신용회복, 개인회생·파산, 재창업 절차 상담
 - 재창업 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02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 제도

“

성실 실패기업인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재창업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재기지원으로 원활한 재기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성실경영평가 폐업이력이 있는 예비 또는 업력 7년 이내 재창업자
- 성실경영 심층평가 유효기간 내 성실경영평가 통과자

사업내용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 전 기업 경영,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해 평가하여 통과자는 재창업 지원사업, 재기기업인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의6, 제99조의8) 및 성실경영 심층평가 등 신청자격 부여

〈 재창업 지원사업 〉

- [중진공] 재창업자금
- [창진원] 재도전성공패키지
- [산·기보] 재창업자금-신복위
- [지자체] 성실경영평가를 실시하는 사업 등

- 성실경영 심층평가 폐업 전·후 적극적 성실경영 노력 및 재기성공역량 등을 심층평가 하여 통과자는 재창업 지원사업 우대혜택 부여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 주요 우대혜택 〉

기 관	우대혜택 내용
중진공	• 재창업자금 금리우대(△0.3%p) 및 요건완화(저신용 조건 제외) • 재창업자금 전용트랙 운영(신청권한 부여) •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평가 면제
창업진흥원	• 재도전성공패키지 일반형 서류평가 면제
기술보증기금	•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심사시 '도덕성평가' 우대
SGI서울보증	• 무담보 이행 및 인허가 우대보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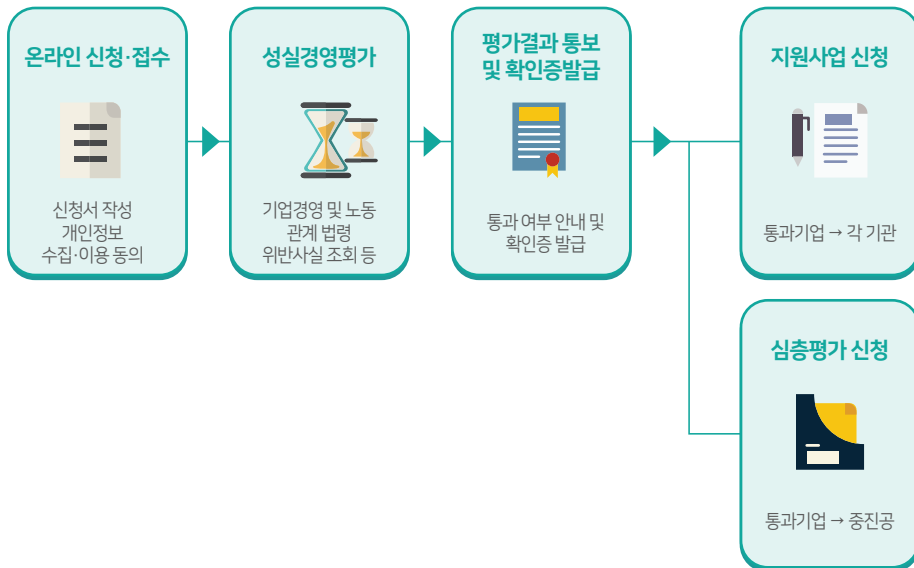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 신청
 -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성실경영평가 온라인 신청 생략 가능

평가방법 및 내용

- 성실경영평가 서류 평가(비대면 방식)로, 재창업 전 기업 경영 및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평가
 - * 통과자는 '성실경영평가 통과 확인증' 발급(통과일로부터 차년도 말까지 유효)
- 성실경영 심층평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성실경영 심사위원회 개최로, 폐업 전·후 적극적 성실경영 노력 및 재기준비도 등 발표평가
 - * 통과자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확인증' 발급(통과일로부터 차년도 말까지 유효)

사업절차



유의사항

-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성실경영평가 통과기업은 재창업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부여되나, 사업별 지원기준 및 별도평가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됨(사업별 요건 사전확인 必)

사업문의 및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앙재도전종합지원센터
 - ☎ 02-3211-5609, 5610
 -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



03

재창업자금

“

폐업이력 등으로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추진 중소기업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재기와 재창업을 도모

”

지원대상

- 업력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미만) (예비)재창업기업으로 아래 유형을 모두 만족하는 자
 -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저신용자 등)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가 등록되어 있는 자
 - ②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재창업자

-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 * 과거 폐업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거나, 폐업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폐업 기업의 업종이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지원 사업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재창업자금 우대 사항

-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우선 접수하며,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로 신청 가능
 - * 중기부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또는 TIPS-R 선정
 - * 정부의 R&D사업 선정
 - * 특허·실용신안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중이거나 사업화한 기업
 - * 재도전Fund 투자유치
 - *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선정 및 혁신성장분야(용자 공고 참고 1) 영위
 - * 소재·부품 장비산업(용자 공고 참고 4) 영위 기업

별도접수(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①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 동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 (지원방식) 신복위 접수 → 중진공·신보·기보·NICE평가정보·한국기업데이터 중 한 개의 기관이 평가 → 위원회 심의 → 신보·기보 보증서 발급 → 신용회복 처리 후 중진공 대출

지원내용

- 재창업자금 시설·운전자금 융자(직접대출, 대리대출)
 - * 지원한도: 6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 대출기간: 시설 10년(거치 4년 포함), 운전 6년(거치 3년 포함)이내
 -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금리 우대($\Delta 0.3\% p$)

지원절차

- 재창업자금(기술혁신형 포함) 융자 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자금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온라인 접수

꼭 알아두세요!

- 세금체납종인 경우 압류·매각의 유예 승인 시 대출 가능

문의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 1811-3655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자금 상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 ※ 자세한 사항은 2024년도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 참조(중진공, 중기부 홈페이지)



04

재도전 성공패키지

“

성실한 실패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지원하여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

신청대상

-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
- * **예비 재창업자** 공고일 전까지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 **재창업자**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최종선정(K-Startup 선정자 공지) 전까지 ‘신청(지원) 가능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순번	신청(지원) 가능 예외 사항
1	•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2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3	•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체납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성실경영 평가 결과 성실로 판명된 자는 36개월까지 체납처분유예 신청 가능(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시행령 제99조의 6)

* 단, 최종선정(K-Startup 선정자 공지) 전까지 ‘압류·매각의 유예 승인 통지서(舊 체납처분유예 승인 통지서)’를 제출하거나 ‘완납’한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부적합으로 판명된 자(기업)

④ 동일 연도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기업)(동시수행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초격차스타트업1000+ 프로젝트,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창업중심대학,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 ① 동일 연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② (연도 무관) 타 부처 및 지자체 지원 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및 지원 가능

- ⑤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선정자(기업)
- ⑥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⑦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문 참조(www.k-startup.go.kr)

신청기간

- 연간 1회 (1~2월 사업공고)

지원규모

- 282개 사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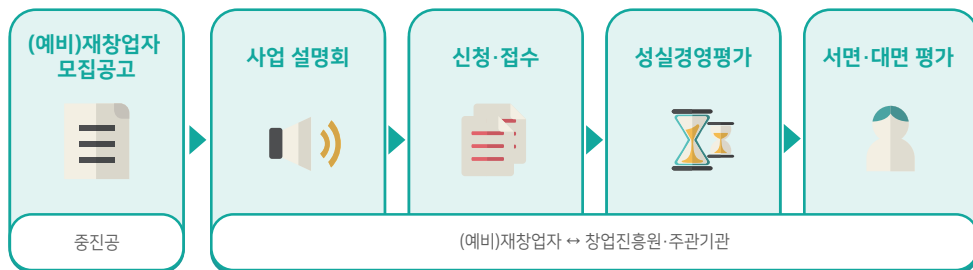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100백만원), 재창업 교육, 멘토링 등 패키지식 지원

신청방법

-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 내 사업공고 확인

사업절차



문의

-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실 ☎ 044-410-1761, 1763, 1766, 1769



05

신용보증기금 재기지원보증

“

실패기업인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들의 기술 및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채무상환 및 추가 자금조달을 위한 보증을 지원

”

지원대상

- 신보 단독채무자로서 실패한 기업 및 재도전 기업주가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실제 경영자인 기업

지원내용

- 회생지원보증 또는 채무조정을 수반하여 취급하는 신규보증
 - ① 회생지원보증 수반 신규보증: 신보 구상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보증 (회생지원보증)과 동시에 신규자금을 지원
 - 지원금액: 매출액, 자기자본 등을 감안하여 내규에 따라 결정
단, 상각채권은 최대 75% 감면
 - 보증조건: 보증비율(회생지원보증은 전액보증, 신규보증은 80% 이상), 보증료율(최대 1.2%)
 - ② 채무조정 수반 신규보증: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를 성실 변제 중인 자에게 신규자금을 지원
 - 지원금액: 매출액, 자기자본 등을 감안하여 내규에 따라 결정
 - 보증조건: 보증비율(80% 이상), 보증료율(최대 1.2%)

신청방법

-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통해 신청

지원절차



문의

-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 1588-6565

06 기술보증기금 재기보증

“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이 정신을 갖춘 실패 기업 또는 경영자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회생지원보증 또는 채무조정과 함께 신규보증을 지원

”

지원대상

- 기보 채무자로서 변제책임이 있는 기업 또는 기업주(대표자, 실제경영자)가 영위하는 기업
-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기업
- 재기보증 신청 제외 대상
 - 휴업중인 기업, 실패기업 또는 재도전 경영자가 기보 외에 다른 기관에서 등록한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지원내용

- **채무조정** : 대위변제후 1년경과 및 상각한 채권은 최대 75% 감면*
 - 우수기술기업(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등은 최대 90% 까지 감면
- **신규보증** : 사업영위를 위한 신규보증(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 대위변제 발생책임이 있는 기업주인 점을 감안,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재기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 지원

신청방법

-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1544-1120)을 통해 신청

지원절차



- **지원결정**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기업

문의

-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 1544-1120



07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에 대해
재기 가능성을 평가하여 재도전 기회 제공으로 창업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지역신보의 대위변제기업 또는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 실패경험이 있으나 재도전 의지와 능력을 갖춘 성실기업

1. 대위변제기업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 **대위변제기업** 지역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으로서 지역신보 구상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기업

* 대위변제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대위변제기업의 대표자, 연대보증인

* 대위변제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대위변제기업의 대표이사, 연대보증인

- **법적채무 종결기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면책 확정을 받은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개인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 ③ 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 ④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2. 관리종결기업

- 지역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해 “추심불능채권”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지역신보가 채권을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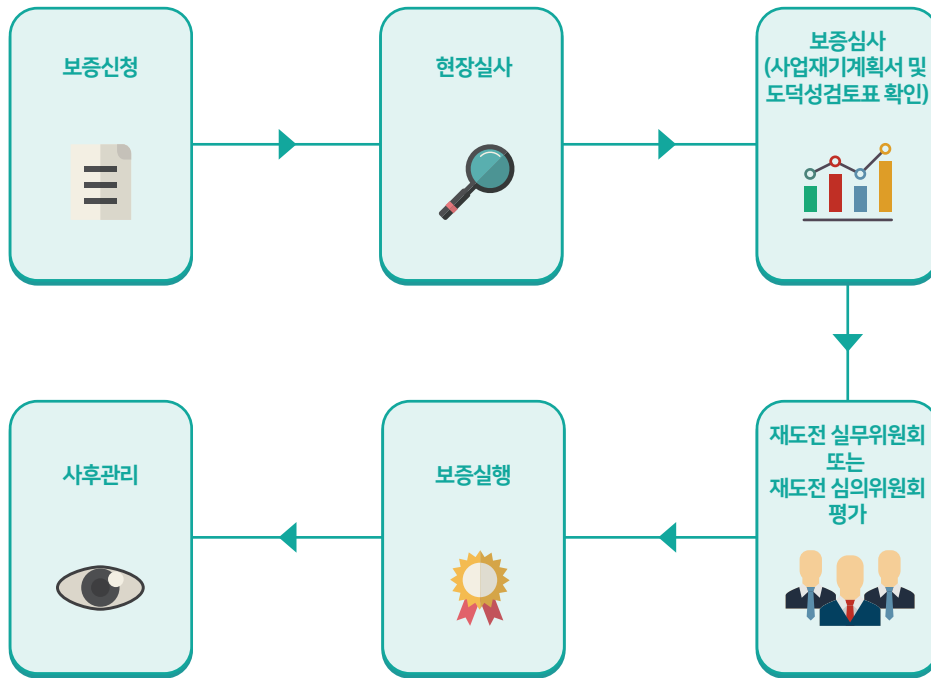
- 대위변제기업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 보증한도: 본건 최대 5천만원 이내(본건 포함 같은 기업당 지역신보 보증금액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100%
 - 보증료: 1.5% 이내
- 관리종결기업
 - 보증한도: 본건 최대 1억원 이내(본건 포함 같은 기업당 지역신보 보증금액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100%
 - 보증료: 0.8%

신청방법

- 가까운 지역신용보증재단 (별첨 참조)을 통해 신청



지원절차



문의

•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 1588-7365



지역신용보증재단 현황

지역	전화번호	주소지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45 (SC은행 3층)	033-260-0001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2~3층)	1577-5900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4층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	055-212-1250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7층)	054-474-7100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중소기업지원센터 1층	062-950-0011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4층	053-560-6300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6 대전신용보증재단 빌딩	042-380-3800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시 부산진구 진연로 15 (부산신용보증재단 사옥 7층)	051-860-6600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공덕동 168), 울산신용보증재단빌딩	1577-6119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33-10 (나성동, 트리플렉스빌딩 5층)	044-865-0550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3층	052-289-2300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9층 (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1577-3790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전남신보빌딩 3층	061-729-0600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2층	063-230-3333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노형동, KT&G 제주본부4층)	064-758-5740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 150번길 24, 4층	041-530-3800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충북중소기업진흥센터 5층)	043-249-5700



08

재도전기업 계약이행 보증보험 지원

“

재창업자금 융자기업에 대해 납품계약 체결 시 필요한
계약이행 보증보험을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발급 지원

”

지원대상

- 재창업자금 대출기업(대출일 기준 2년 내 신청기업)
- ※ 단, 다음의 경우 계약이행 보증보험 지원 대상 제외
 - 재창업자금 대출금을 90일 이상 연체 기업, 재창업자금 기한의 이익 상실(연체 등으로 만기 전 상환 도래) 된 기업, 서울보증보험(주) 보험 사고자

지원내용

- 2년간 기업 당 5억원 계약이행 보증보험 신용 지원
- 이행보증보험(입찰,계약,차액,선금금,하자,지급) 및 인허가보증보험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방법

- 가까운 서울보증보험(주) 지점 통해(☎ 1670-7000) 신청

문의

- 서울보증보험(주) ☎ 02-3671-7528
- 중소기업진흥공단 ☎ 055-751-9625



09

경기도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

“

경기도 내 우수한 재기 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재창업 유도 및 일자리 창출

”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재창업”에 해당하며, 아래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기도 소재 기술기반 (예비) 재창업자
 - 1.예비재창업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경기도 내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2.초기재창업자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공고일 기준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위치한 자
-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 다수의 사업자(개인,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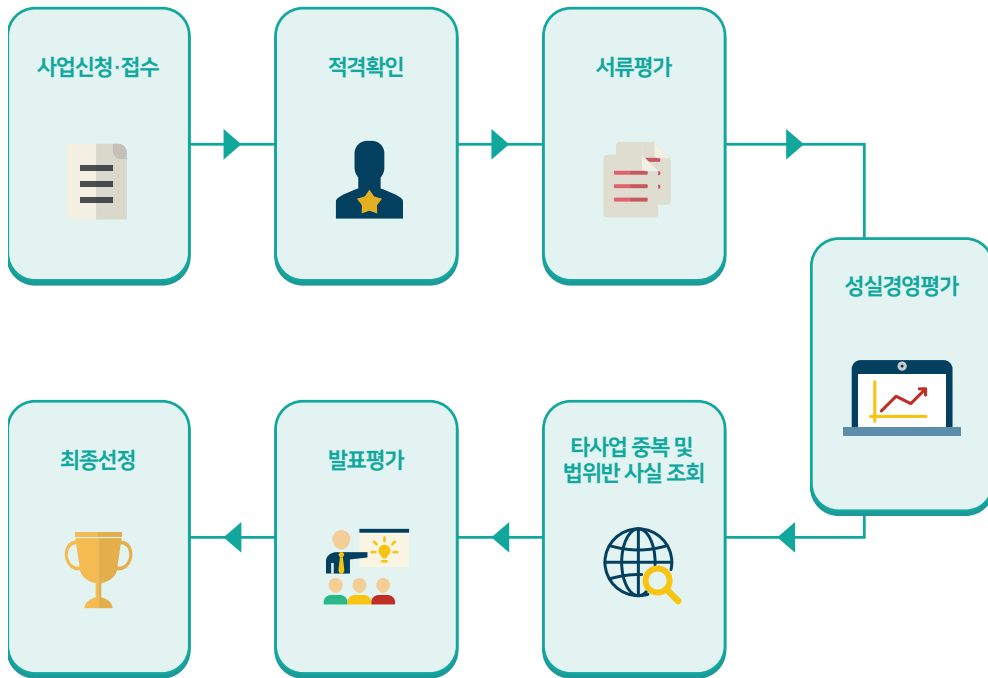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15개사 대상 사업화자금과 역량강화 지원
 - 사업화 자금 지원 : 아이템 개발, 지재권 출원/등록, 홍보 등 최대 30백만원/社
 - 역량강화 지원 : 역량강화 교육, 투자IR, 데모데이, 투자상담회 등
- 스타트업 지원센터 운영
 - 지원내용 : 일반상담, 분야별 전문가 상담 및 심층 컨설팅 지원
 - 상담분야 : 경영, 판로, 사업화, 자금, 노무, 세무, 특허인증, 법률

참여기업 모집

- 신청기간 : '24년 3월 중
- 신청방법 : 경기스타트업플랫폼(gsp.or.kr)에서 온라인 신청

선정절차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육성팀 ☎ 031-8039-7107



10

광주 창업재도전지원사업

“

우수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재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한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에 재도전하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
- * 공통 공고일 기준 기술분야 아이템을 보유한 광주광역시 거주자
-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재창업이 가능한 자
- *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지원, 각종 네트워킹 등
 - *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제품고도화/고급화, 지재권 확보 지원 등
 - * 사업화지원 마케팅, 디자인, 각종 전시회/박람회 참가 등
 - * 자율제안 기업수요 반영
- 집체교육, 기본역량강화 프로그램, 컨설팅 등
 - * 선정기업 선배창업 기업특강, 그룹형 멘토링, 컨설팅 지원
 - * 우수기업 R&D/비R&D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과제관리 등
- 지원한도 (예비)재창업자 5개사 내외, 최대 21,000천원 이내

신청기간

- 2024. 3. ~ 2024. 4.

신청절차



문의

- 광주테크노파크 I-PLEX창업센터 ☎ 062-239-9613, 9615
-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 062-613-4083



11 부산시 재창업 지원사업

“

유망한 아이템을 보유한 재창업자를 발굴 및 육성, 사업화자금 및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성공창업기업으로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 업력 3년 미만 재창업 기업

- ※ 개업연월일 또는 회사설립연월일이 2021. 01. 01. 이후 인 재창업 기업(개인·법인)
- ※ 단, 부산지역 내 본사를 두고 있거나 이전이 가능한 기업으로 제한
- ※ 협약기간 내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중복 수혜가능
- ※ 제외대상
 - 단순 도·소매업, 음식점 등의 자영업종 및 사치향락업종 등
 - 국세 또는 지방세 채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2024년 부산시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선정 기업
 - 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지원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자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지원내용

프로그램	세부내용
사업화자금	• 시제품제작, 판로확대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기본)기업당 10백만원 + (중간평가 결과)최고 6백만원 지원
창업특례자금지원	• 창업 및 경영안전에 필요한 창업운전자금 융자 추천지원 • 최대 5천만원 대출 연계 * 금리 : 연2.7%(고정금리)+보증료(0.6%)
기업역량진단 및사업화 전략 설정	• 기업전담 전문위원을 매칭,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진단 및 코칭 진행
사업화 역량강화 (1개 필수이수)	• 기획서 작성 프로그램 •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청방법

- 부산창업포털(www.busanstartup.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 모집기간 : 2024.2.22.(목) ~ 2024.3.21.(목) 18:00까지

기업선정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 → 기업선정

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단 창업기반조성팀 ☎ 051-600-1858

2024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제도

(Re-Startup Support)

Part1

재창업 지원

2. 개인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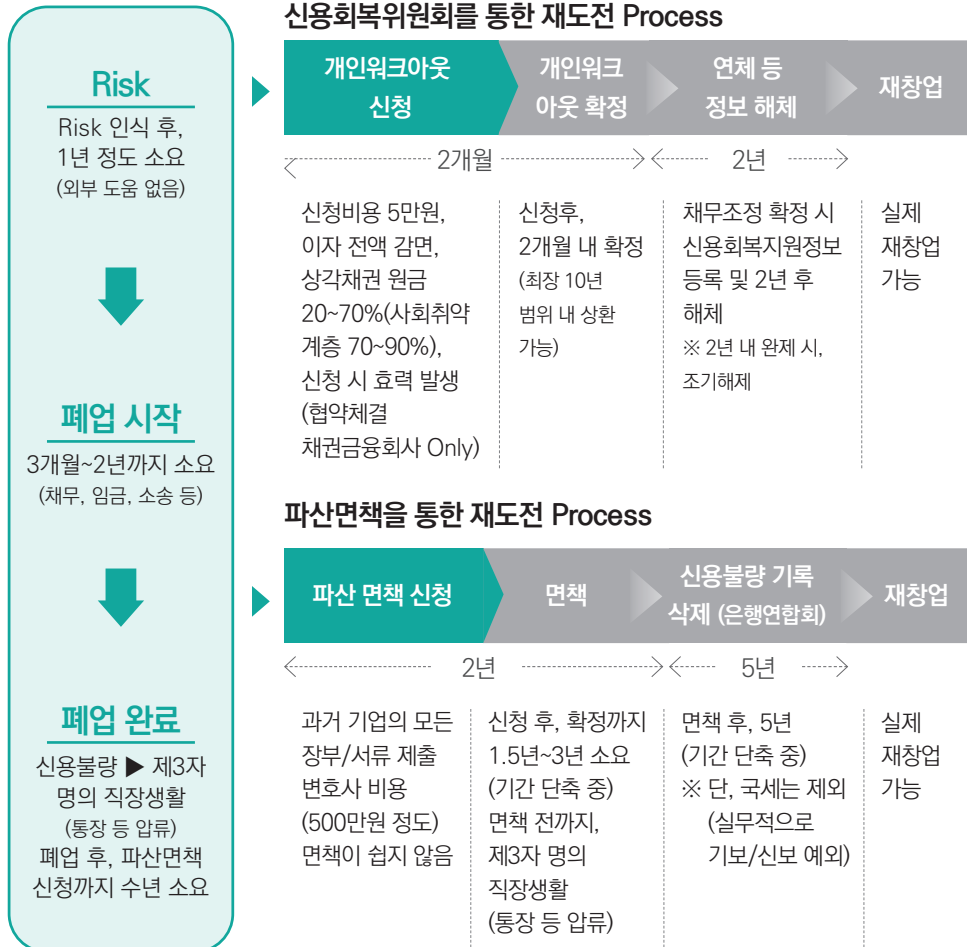
1. 신용회복 절차
2. 개인 채무조정 비교
3. 개인 워크아웃
4.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5. 개인 회생 제도
6. 개인 파산, 면책 제도
7.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01

신용회복 절차

개인 신용회복 프로세스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상환이 어려운 기업인은

-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최장 10년 범위 내 채무상환 가능 및 완제 시 면책
- **개인회생** 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3년 이내* 채무상환 가능 및 완제 시 면책
* 다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5년 이내
- **개인파산·면책** 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 면책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vs 법원 개인 파산·면책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협약 가입된 금융회사 채무를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일정기간 동안 분할상환
- **법원 개인 파산·면책** 채무자 현재의 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잔여채무를 탕감함

기업인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상담

- **맞춤형 재도전 지원**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경영위기기업 및 재도전기업인에게 분야별 전문가 심층 상담, 정책자금 융자 연계 지원
 - 신청·상담 ☎ (서울) 02-3211-5611(www.rechallenge.or.kr)
-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신용회복위원회
 - 주채무 및 보증채무 합계금액이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보유한 대표이사 등에게 채무조정 및 재창업자금 융자 지원
 - 신청·상담 ☎ 1600-5500(www.ccrs.or.kr)
- **중소기업인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중소기업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실패 기업인의 채무를 조정
 - 신청·상담 ☎ 1588-3570(www.kamco.or.kr)
- **개인 회생·파산 종합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 개인 회생·파산 대상자에게 소송 대행 서비스를 제공
 - ※ **개인회생** 무담보채무 10억, 담보부채무 15억이하 채무자 중에서 일정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 ※ **개인파산**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
 - 신청·상담 ☎ 국번없이 132(resu.klac.or.kr)



02

개인 채무조정 제도 비교

구분	개인 워크아웃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운영 주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시행 시기	2002.10.01	2012. 4. 2.	2004.09.23	1962.01.20
대상 채권	협약가입 금융기관보유채권	좌동	제한없음(사채포함)	제한없음(사채포함)
채무 범위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주채무 및 보증채무 30억	담보채무(15억) 무담보채무(10억)	제한없음
대상 채무자	90일 이상 연체자	좌동	계속적 소득이 있는 과다채무자	파산원인
보증인 영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좌동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채무 조정 수준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각채권 원금 20~70% 감면(사회취약계층 최대 90%),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일반채권 원금 30% • 상환기간 최장 10년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각채권 원금 20~70% 감면(사회취약계층 70~90%),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일반채권 원금 30% • 중진공, 신·기보의 상각채권 또는 대지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채권, 동기관이 캠프에 양도한 채권의 경우 75% 감면 • 상환기간 최장 10년 • 상환유예 최장 3년 (2억원 초과 최장 5년)	• 3년 이내 채무변제 * 다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5년 이내	청산 후 면책
법적효력	변제 완료 시 면책	좌동	변제완료 시 법적 면책	청산 후 법적 면책
한국신용정보원 연체 정보 해제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좌동	변제계획 인가 시	면책 결정 시
한국신용정보원 공공 정보 등록	신용회복지원 중 * 채무변제 완료시 또는 신용회복지원 확정 이후 2년 이상 변제할 경우 공공정보 삭제	신용회복지원 관련 공공정보 공유 제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 채무변제 완료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시, 인가결정일로부터 5년 경과시 공공정보 삭제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 면책결정 후 5년 경과할 경우 공공정보 삭제



03 개인 워크아웃

“

총 채무액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등을 통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채무자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등”의 정보가 등록되었거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채무자

지원내용

- 담보 채무자
 - 채무감면 연체이자만 감면 후 이자율 약정이자의 30~70% 수준으로 적용하여 원금과 이자납입(단, 최저이자율 한국은행 기준금리 + 2.25%)
 - 상환기간연장 최장 35년
- 무담보 채무자
 - 채무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감면, 상각채권 원금 최대 20~70%(사회취약계층 70~90%)까지 감면,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일반채권 원금 최대 30%까지 감면
 - 상환유예 최장 3년, 유예이자 연 2.0% 범위 내
 - 상환기간연장 연체이자만 감면 후 이자율 약정이자의 30~70% 수준으로 적용하여 원금과 이자납입(단, 최저이자율 한국은행 기준금리 + 2.25%)

신청방법

- 가까운 서울보증보험(주) 지점 통해 ☎ 1670-7000) 신청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 또는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신청 ☎ 1600-5500
- 홈페이지 www.ccrs.or.kr



기관소개

신용회복위원회 소개



설립목적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주요 업무

- 채무상담 및 조정, 소액금융, 신용보증, Fast-track, 신용교육 등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을 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 안정망 역할을 수행
- 채무상담 및 조정
 - 과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채무를 원만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 재창업지원
 - 실패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을 병행 지원



04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

사업실패로 채권금융회사에 30억원 미만의 채무가 있는 기업인에 대해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 및 재도전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경영실패로 주채무와 보증채무 총 채무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개인사업자, 재창업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제외 대상업자에 해당하지않는 자

대상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 채무
- * 협약가입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확인 가능

채무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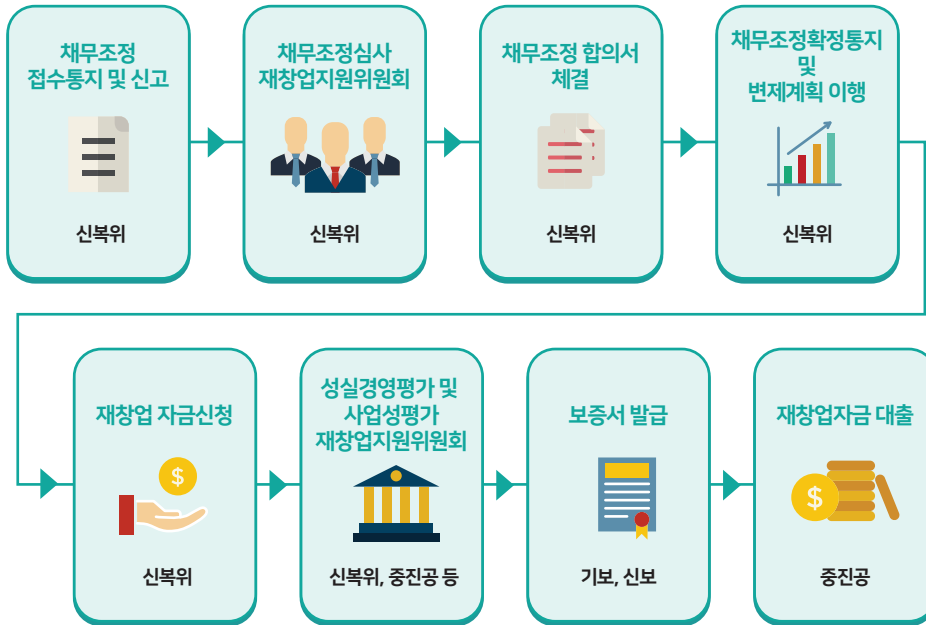
- 채무감면 이자 전액감면, 상각채권 원금(20~70%, 사회취약계층 70~90%), 기초수급자및 중증장애인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
⇒ 재창업지원의 경우 중진공 및 신·기보의 상각채권 또는 연체시작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채권, 동 기관이 캠프에 양도한 채권의 경우 최대 75% 감면
- 상환유예 조정 후 채무액 2억원 이하 시 최장 3년, 2억원 초과 최장 5년간 채무상환 유예 가능
- 상환기간연장 조정 후 채무액 2억 이하 최장 8년, 2억원 초과는 최장 10년 이내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자금

- 지원요건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지원대상에 해당하면서 재창업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창업지원 신청 전에 실패한 업종이 음식업, 소매업, 금융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지원내용 사업계획에 의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까지 지원하며, 운전자금은 최대 10억까지 지원
-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등 상환조건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취급기준에 따름



지원절차



꼭 알아두세요!

-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연체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는 공공정보(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등록 시 해제되나, 신용거래는 제한적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 용자를 지원받은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 공유가 제한됨

신청 및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05 개인 회생 제도

“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 제도

”

지원대상

- 일정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과다 채무(담보채무 15억이하, 무담보채무 10억)로 인해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채무자

신청비용

- 신청서 인지대(3만원), 금지명령 신청인지대(2천원),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등이 소요
- *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우편송달 횟수가 증가하여 송달료도 같이 증가함

소요기간

- 평균 4개월~6개월 소요

개인회생 효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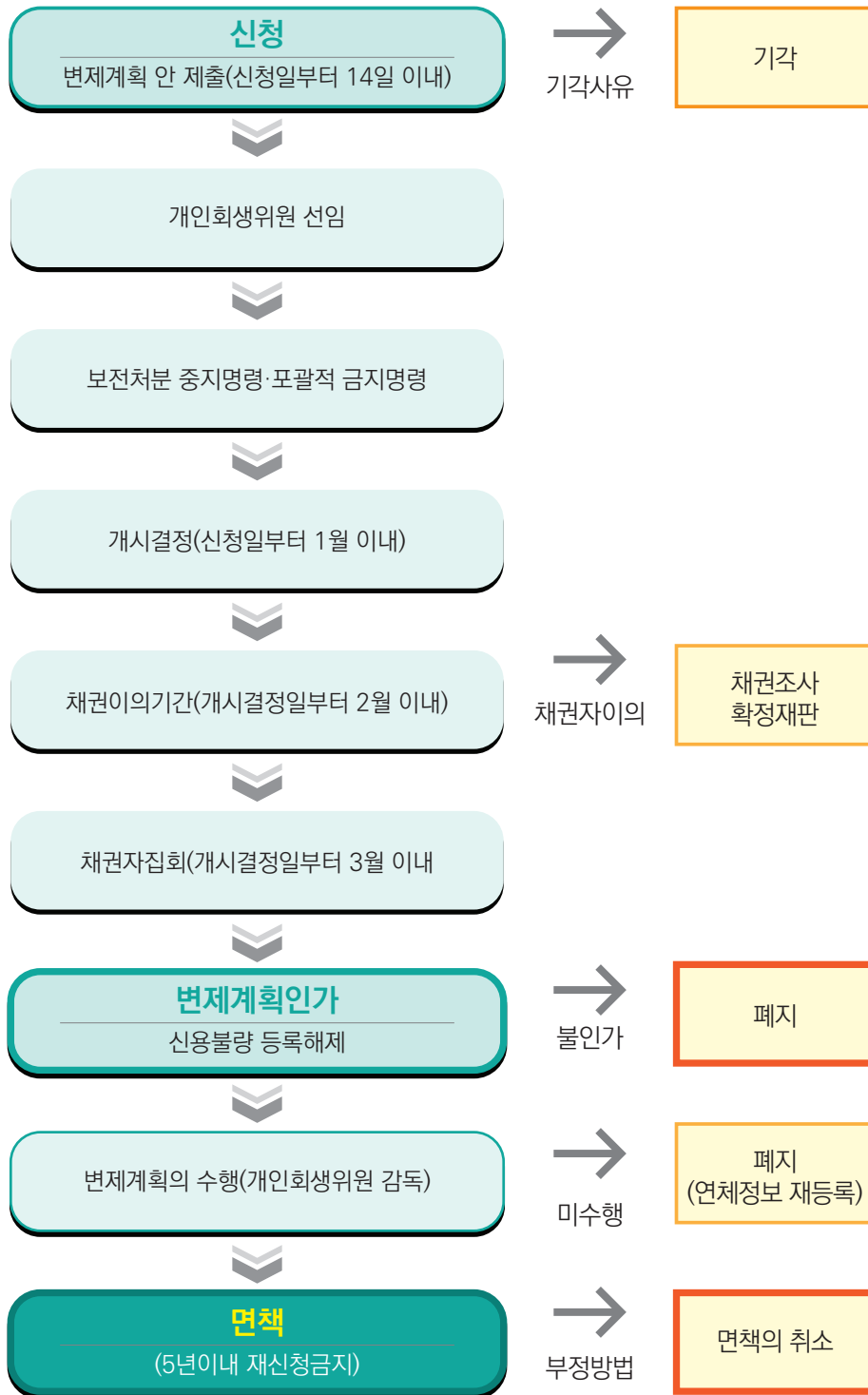
- 월 소득에서 생계비(통상 최저생계비의 150%)를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최장 3년간* 채무상환 후 잔여채무 면책
- * 다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5년 이내

신청방법

- 채무자, 신청취지,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이 기재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
-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진술서 등
-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Quick Menu의 [양식모음]에서 확인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 변제계획 인가 후, 기존의 “연체 등” 신용도판단정보가 “개인회생 인가 중”이라는 공공정보로 수정되나,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어려움
-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한 경우 또는 인가일로부터 5년 경과 시 “개인회생 인가 중”공공정보는 삭제
- 중소기업창업진흥공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개인회생 인가 정보”, “파산정보” 등 공공정보 공유가 제한됨

신청

- 채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06

개인 파산·면책 제도

“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개인에 대해 총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갚아주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잔여채무 면책하는 법적 제도

”

지원대상

- 개인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150%보다 소득이 적은 개인 채무자

신청비용

- 신청서 인지대(2천원), 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 등이 소요
- *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우편송달 횟수가 증가하여 송달료도 같이 증가함

소요기간

- 평균 12개월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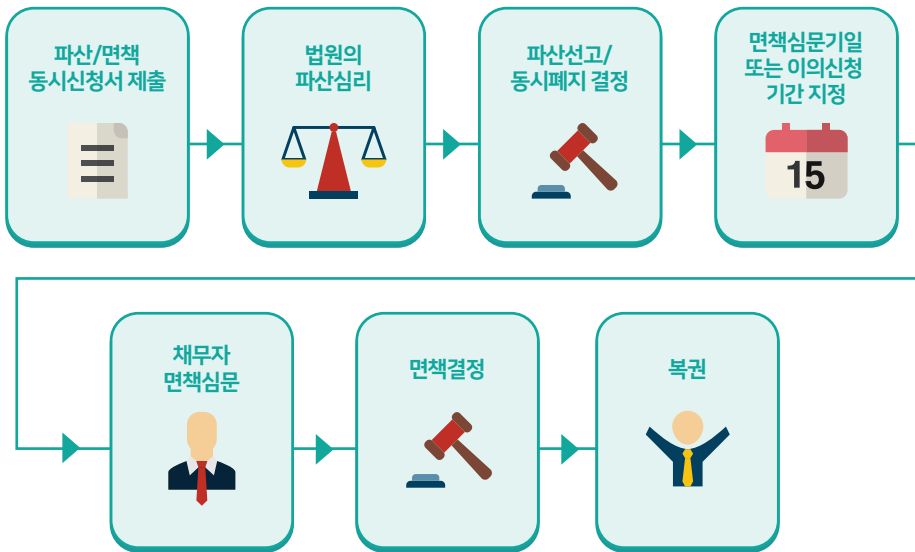
개인 파산·면책 효력

- 보유자산을 모두 정리하여 채무를 상환한 후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고, 면책 결정된 채무는 변제 책임이 소멸됨

신청방법

- 개인 채무자는 신청서(파산·면책 동시), 진술서,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의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
-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Quick Menu의 [양식모음]에서 확인

개인 파산·면책 절차



-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포함)이 5억원 미만이면 간이파산 가능

개인 파산·면책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 면책결정시 기존의 “연체 등”의 신용도판단정보가 “면책결정자*”라는 공공정보로 수정되나,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어려움
 - * “면책결정자”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삭제
- 공적·사적인 자격·권리에 대한 제한, 신원조회 시 노출

신청

- 채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07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

금융취약계층의 부실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채무감면 지원

”

지원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에서 민간금융회사 및 공공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연체 채무자
- * 국민행복기금 등 신용회복 프로그램 채무자 포함

지원내용

- 채무자 신청이 있을 경우 매입한 채무에 대해 원금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실시
- 채무자의 상환능력, 연령, 연체기간을 감안하여 30~60%* 채무감면하며 신청내용에 따라 최대 15년 분할상환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까지 감면

대상자 구분	지원내용	공통
주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율(30~60%) 적용 * 소득,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등 반영	• 소득 및 재산 여부에 따라 원금 및 이자 감면 • 최장 10년 무이자 분할상환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장 15년)
연대보증인	채무관계자수 안분 후, 채무감면율(30~60%) 적용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자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자* 개인상황에 따라 60~90% 감면 * 중소기업인(70%), 기초수급자, 고령자 등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센터 ☎ 1588-3570)



- M E M O -

재창업 지원

개인재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조세, 신용정보 제도 지원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지원

중소기업 사업정리

2024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제도

(Re-Startup Support)

Part1

재창업 지원

3. 조세, 신용정보 제도 지원

1. 재기중소기업인 조세지원
2. 신용정보 불이익해소



01

재기중소기업인 조세지원

“

국세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통해
재기기업인에 대한 원활한 재기를 지원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이 위기에 처한 자

1.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2.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3.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

지원 요건

1.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봄) 미만이고 신청일 당시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인 자
2.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함)의 평균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자
 - ✓ 중진공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15억원
 - ✓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쳐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15억원
 -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금액 제한 없음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법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4. 신청일 당시 「조세법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5. 신청일 당시 다음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
 - ✓ ㄱ.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것
 - ✓ ㄴ.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가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할 것
 - ✓ ㄷ.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것
 - ✓ ㄹ.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것



지원내용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최대 3년 이내 징수유예
- * 관할 세무서에서 징수유예기간중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음

신청방법

- 납부할 국세(세목, 납부기한, 세액 등), 징수유예를 받은 이유와 기간 등을 징수유예신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126) 신청
- * 신청서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참조

근거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원대상

- 납부고지의 유예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을 최대 3년간 유예

신청방법

- 납부할 국세(세목, 납부기한, 세액 등),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이유와 기간 등을 체납처분유예신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126) 신청
- * 신청서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참조

근거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소멸대상

- '17.6.30. 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

(무재산 기준)

1. '17.6.30. 현재 결손처분
2. '17.6.30. 현재 체납처분을 중지
3. '17.6.30. 현재 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달
4. '17.6.30. 현재 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달
5. '17.6.30. 현재 재산가액이 체납액 대비 현저히 부족 등

적용 대상자

- **수입기준**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보다 낮은 자
- **재기사업자** '17.12.31. 이전 폐업한 후 '18.12.31.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 **조세범 등 제외**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을 받거나 재판·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제외

신청방법

- 사업자등록증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126)에 신청
- * 신청서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참조

근거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신 청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126



02 신용정보 불이익 해소

“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해 재기 지원자에 대해 불리한 신용정보를
금융기관간 공유 제한 및 신속한 신용등급 회복 지원

”

금융기관간 불리한 공공정보 공유제한

적용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결정, 법원 개인회생 인가·파산면책 등을 통해 신용이 회복된 자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자금을 융자 받은 기업인

불리한 신용정보 공유제한

- 재기사업자(중진공 재창업자금을 받은 자, 신보·기보의 재기지원사업자 등)의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회사 간 공유 및 개인 신용등급 반영을 제한

* 공유제한 정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확정,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확정 정보 등

지원절차

-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재창업자금 융자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공유제한

꼭 알아두세요!

- 금융기관간의 불리한 공공정보 공유는 제한되지만, 민간 금융기관은 채무불이행 정보를 직접 관리할 경우 해당 기관과의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25

2024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제도

(Re-Startup Support)

Part2

경영위기 지원

1.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지원

1. 구조개선전용자금
2. 선제적 자유통조개선 프로그램
3. 한국자산관리공사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4. 캠프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Sale&Lease-back)
5. 중소기업 진로제시 컨설팅
6. 중소기업 워크아웃
7. 워크아웃 컨설팅
8. 기업회생 제도
9. 중소기업 간이회생 제도
10.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01 구조개선전용자금

“ 위기징후가 보이는 중소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책자금을 대출하여 조기 정상화를 지원 ”

적용대상

• 다음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 ②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업(S&LB, 국제물납법인, 패키지형 금융지원) 참여기업 중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기업
- ⑦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주요 용자제한기업

- ① 휴 · 폐업중인 기업
-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압류·매각 유예시 용자가능
-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록기업
- ④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
- ⑤ 정책자금 용자심사 탈락기업으로 6개월 미경과 기업
- ⑥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⑦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⑧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자세한 사항은 2024년도 정책자금 용자공고 참조

용자지원

- 용자범위 :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에 한함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준용(변동금리)
- 대출기간 : 신용 대출 5년(2년 거치 3년 상환)
- 대출한도 : 3년간 10억원 이내



신청기간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신청절차



문의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 1811-3655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자금 상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02

선제적 자물구조개선 프로그램

“

중진공과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자물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

”

적용대상

- 중진공 및 협약은행 대출금 잔액을 보유한 위기징후 중소기업 중 구조개선 추진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 * **협력은행** :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경남은행, NH농협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 ** **지원 제외 대상** : [10]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제한요건과 동일

구 분	대 상
대상기업	▶ 설립 3년 이상 법인기업
체납여부	▶ 가압류, 세금체납 등 권리침해 및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
기업상태	▶ 회생절차 해당사항 없는 기업
신용위험	▶ 중진공 조기경보 최종판정등급 기준 “주의” 또는 “예비경보” 기업 ▶ 또는 (금융권) 신용위험 평가결과 “B” 또는 “C” 등급인 기업 ▶ 또는 (신용정보회사) 기업신용평가결과 “BB” ~ “CC” 등급인 기업
외감기업	▶ 최근결산년도 감사의견이 “부적절” 또는 “의견거절”이 아닌 기업

지원 내용

- 회계법인 기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유동성공급 등의 중진공 및 협약은행 연계 금융지원 또는 경영개선계획 수립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비 고
금융지원	신규대출	신규자금 신용대출 지원(시설 및 운전)
	만기연장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
	금리인하	기존 대출금의 금리인하
경영개선		경영개선계획 수립비용 지원
		기업 부담금 면제

신청기간

- 연중(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상담을 통한 접수
 - 협약은행을 통한 신청 및 은행 → 중진공 추천을 통한 접수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922~992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및 협력은행

03

한국자산관리공사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

기술력과 영업력을 갖춰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회생기업에 캠퍼와 중진공이 자금을 지원하고
서울보증보험이 우대보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대상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기업(종결 기업 포함) 중 기술력과 영업력을 갖춰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 ※ **지원불가 대상**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영위 기업, 소상공인(제조업은 가능), 인가 후 세금 및 4대 보험 체납 기업(유예분 제외), 개인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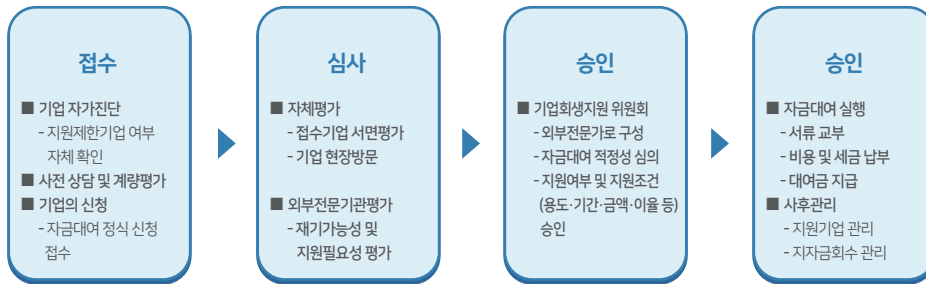
지원 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진공의 자금대여 및 서울보증보험의 우대보증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자금용도	• 운전자금 원재료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 종업원 급여 등 • 시설자금 기계설비 구입 등 • 대환자금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기존 회생담보권 대환
대여한도	• 기업당 최대 20억원 이내(대환자금 한도 별도)
대여기간	• 최장 5년(연장기간 포함) 이내(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없을 시 대여금 잔액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3년 이내 추가 연장 가능)
대여이율	• 5~6% 수준 (24.3월 기준, 매달 변동)
추가지원	• 컨설팅(민간전문가 매칭) 등



지원절차



※ 3억 이하 소액 지원의 경우 간소화된 FAST-TRACK 절차로 진행

신청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기업(<https://oncorp.or.kr>) 신청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 방문 또는 전화 ☎ 1588-3570



04

캠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Sale&Lease-back)

“

기업의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후 기업에 재임대하여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

”

지원대상

- 일시적 유동성 위기 발생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
 - ※ 단, 기계·기구 및 개인소유, 재산권 행사 제약 지역 소재 자산은 매입제한 대상임

매매대금 산정

- 감정평가금액과 회계법인 가치평가금액의 평균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

임대료 및 임대기간

- 임대료는 캠코 조달금리와 관리비용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임대기간은 5년

우선매수권 부여

- 기업은 임대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재매입 가능
 - * 재매입가격은 행사시점 공정가치로 하되, 캠코 인수가격을 최저가격으로 함

지원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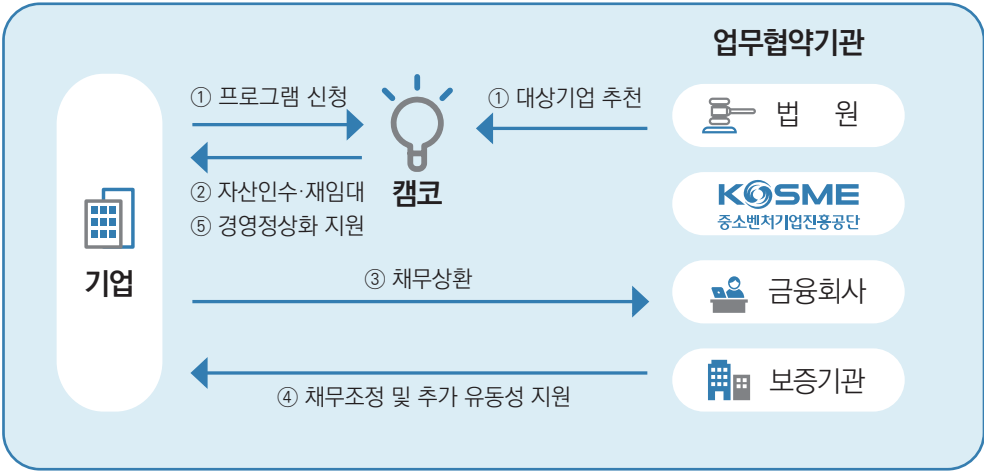
- 유동성확보, 재무구조 개선
- 사업기반 유지로 지속 성장 토대 마련
- 화생기업의 경우 적기 담보권 상환으로 조기 정상화 가능

신청방법

- 온기업'홈페이지에서 신청
 - 회원가입 시 자동신청 (www.oncorp.or.kr)



지원구조 및 협업체계도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 방문 또는 전화 ☎ 1588-3570



05 중소기업 진로제시 컨설팅

“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자금 및 기업회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지원대상

- 아래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영위기 중소기업
 -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거나, 향후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구조개선 등 진로제시 진단을 희망하는 기업
 - 재창업자금* 최초로 지원받은 기업 중, 성공적인 재기를 위하여 경영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 재창업자금 직대(신용) 1억원 이상
 - 기초진로제시 결과 '사업정리'로 처방받은 중소기업 및 사업정리 희망기업

* 단, 기계·기구 및 개인소유, 재산권 행사 제약 지역 소재 자산은 매입제한 대상임

컨설팅 내용

- 기업 기술경쟁력 분석,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평가
- 재무제표 실사 및 추정, 차입금 상환능력 분석, 회생인가 가능성 등 심층 분석

지원내용

- 216만원 한도 컨설팅비용 지원(기업분담금 별도)

신청기간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공고시

신청방법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 내 재기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신청
(www.mssmiv.com)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24, 9626



<참고> 기업 채무조정 제도 비교

구분	중소기업 워크아웃	기업회생	기업파산
	계속가치>청산가치	계속가치>청산가치	계속가치<청산가치
대상	총 채무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	경영위기 기업 중 회생 가능성 높은 기업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
대상 채무	채권은행협의회 가입한 금융기관 채무	기업의 모든 채무	기업의 모든 채무
내용	경영애로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상호 조정하여 경영 정상화 계획 실행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영애로 기업이 회생계획 대로 경영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채무는 면책	구조조정에 실패한 회생불능기업의 모든 재산을 매각하여 채무 변제하고, 해산하여 소멸
감독 주체	채권보유 금융기관 (사적조정)	법원 (법적조정)	법원 (법적조정)
채무 조정	금융기관의 채권행사 유예, 채무조정, 이자감면 및 출자전환 등 협약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 가능	기업의 채무를 영업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환, 나머지는 감면 혹은 출자전환	• 기업의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장점	• 일시적 경영자금 유동성 부족 해결 • 기업회생에 비해 신속한 구조조정 가능	• 정상적인 영업가능 • 강제 집행 등 무분별한 개별적 집행 중지가능	• 채권자·채무자 조세부담 경감 • 회생절차에 비해 간편
단점	• 채권 금융기관에 의해 경영권 포기 또는 간접 • 금융기관 이외 상거래 채무 등은 조정 불가능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 • 공공정보 등재로 인한 행정청의 영업제제 및 거래단절 가능성 • 기업의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민간의 연대보증 채무는 존재	• 법인 계속경영 불가(법인의 해산) • 법인기업 해산으로 주 채무가 면제되더라도 민간의 연대보증 채무는 존재
소요 기간	채무 변제 시까지	회생계획기간 (보통10년)	• 보통 1~2년

06 중소기업 워크아웃

“

부실징후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전제로
대출만기 연장, 금리 재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

”

지원대상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거 실시하는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부실징후기업) 기업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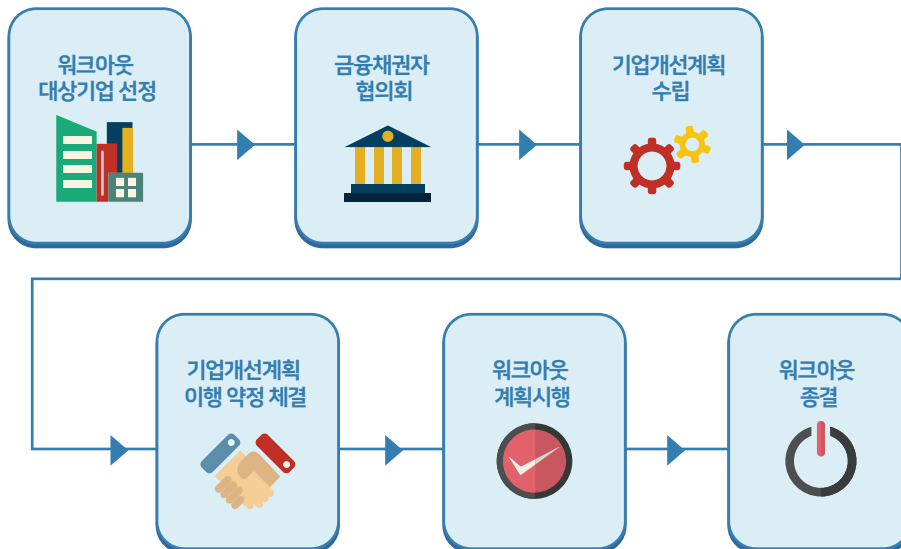
- 금융채권자*의 채무에 대해 채권행사 유예, 이자감면, 출자전환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채무조정과 신규 자금지원

* 민간은행, 중진공, 신·기보, 무역보험공사 유동화전문회사(SPC) 등 금융채권을 보유한 자(非금융기관도 참여)

신청방법

- 대표자가 주채권은행 거래 영업점에 상담 후, 신청

지원절차





장점 및 단점

- **장점** 법에 의한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가능, 금융기관의 불리한 신용정보 등록 없이 신속하게 채권행사 유예,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가능
- **단점** 참여 채권자범위 확대에 인한 절차지연 가능성,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채권 금융기관의 경영권 간섭 발생

문의

-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02-3145-5114



07 워크아웃컨설팅

“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은행 워크아웃 절차를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및 효율적 구조개선을 지원

”

지원대상

- 제1차 워크아웃 협의회 결의로 채권행사의 유예가 결정된 워크아웃 최초기업
- 이미 추진중인 관리절차 만료를 앞두고 있는 워크아웃 연장기업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 또는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에 따른 채권은행자율협의회에 근거한 은행권 워크아웃

컨설팅 내용

- 재무상태 실사
- 경영성과 진단
- 구조조정 실행방안 수립
- 후속절차자문

지원내용

- 컨설팅비용의 최대 3천만원까지(컨설팅 초과금액과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

신청기간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공고시

신청방법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 내 재기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신청
(www.mssmiv.com)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24



08

기업회생 제도

“ 경영난으로 채무를 갚기가 어려울 경우,
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결의를 거쳐 채무를 기업이 감당할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감면하거나 주식전환 등으로 기업회생을 돕는 법적제도 ”

신청자격

- 채무를 변제할 경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현저히 어려워지는 채무가 있는 기업(법인, 개인 포함)
- * (참고) 채무기업이 파산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자, 주주·지분권자도 신청 가능

신청비용

- 자산총액 50억원 이하인 채무기업은 조사위원 보수 및 송달료 등 최소 1,500만원 이상 소요
- * 채무기업의 자산총액이 많을수록 조사위원 보수가 증가하여 신청비용도 같이 증가함

소요기간

- 8~9 개월 소요

기업 회생계획안 인가 효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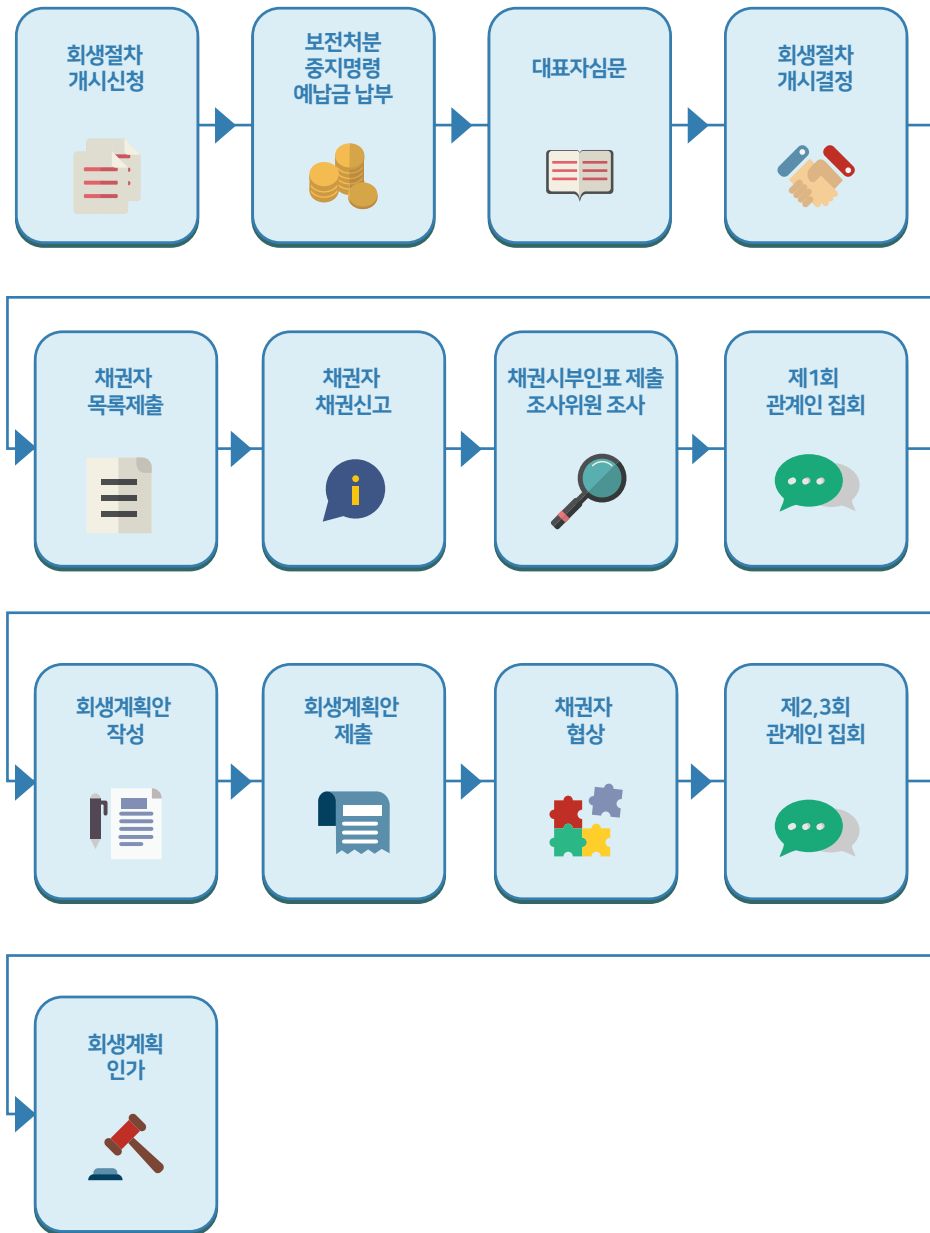
-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경영하여 채무를 상환하며, 통상 회생계획은 일부 출자전환 후 일부 현금변제(최장10년 분할변제)로 진행

신청방법

- 신청인, 채무자, 신청 취지 등이 기재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
- * 회사 현황, 재무제표, 외부감사보고서, 자산·부채 현황 등



신청절차





기업회생 제도 장·단점

- **장점**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서 회사 경영을 지속하면서 비교적 단기간에 일률적인 채무조정가능(사채포함)
- **단점** 불리한 공공정보 등재로 금융거래가 사실상 불가하고, 납품처 등과 거래관계 단절 가능성 존재

꼭 알아두세요!

- 회생제도를 통해 주채무가 감면될 경우,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의 연대보증 채무도 같이 감면되나, 민간의 연대보증 채무는 그대로 존재
- 중소벤처기업부 회생컨설팅을 통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문의

- 수도권, 강원 중앙재도전센터 (여의도 소재) ☎ 02-3211-5611
- 그 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24, 9627

09 중소기업 간이회생 제도

“

부채가 50억원 이하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 회생 절차를 간소화하여
회생인가 소요기간 및 소요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킨 법적 제도

”

신청자격

- 부채가 50억원 이하인 법인, 개인 소액영업소득자
 - * 간이회생 신청을 하는 때에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함

신청비용

- 인지대, 예납비 등 약 1,000만원

소요기간

- 6개월~8개월

기업회생 계획 인가 효력

-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경영하여 채무를 상환하며, 통상 회생계획은 일부 출자전환 후 일부 현금변제(최장10년 분할변제)로 진행

신청방법

- 신청인, 채무자, 신청 취지 등이 기재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
 - * 회사 현황, 재무제표, 외부감사보고서, 자산·부채 현황 등

꼭 알아두세요!

- 회생제도를 통해 주채무가 감면될 경우,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의 연대보증 채무도 같이 감면되나, 민간의 연대보증 채무는 그대로 존재

문의

- 수도권, 강원 중앙재도전센터 (여의도 소재) ☎ 02-3211-5611
- 그 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24, 9627



10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회생절차를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및 효율적 회생을 지원

”

지원대상

- 진로제시컨설팅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서 컨설팅 결과 회생지원가능으로 처방받은 기업
- 업무 제휴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중소기업 중 사전평가를 통해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업무 제휴법원에 ARS* 적용 회생신청을 한 중소기업 중, 협업법원이 사전조사가 필요한 기업으로 추천한 기업
- 개인회생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컨설팅 내용

- | | |
|----------------|-------------|
| •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 대표자심문 답변서 |
| • 채권목록 작성 | • 시부인표 작성 |
| • 관리인 조사보고서 작성 | • 회생계획안 작성 |
| • 관계인집회 관련 서류 | • 회계세무 자문 등 |

지원내용

- 보조금 최대 3천만원 지원(컨설팅 초과금액과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

신청기간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공고시

신청방법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 내 재기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신청(www.mssmiv.com)

문의

- 수도권, 강원 중앙재도전센터 (여의도 소재) ☎ 02-3211-5611
- 그 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24, 9627



- M E M O -

재창업 지원

개인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조세, 신용정보 제도 지원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지원

중소기업 사업정리

2024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제도

(Re-Startup Support)

Part2

경영위기 지원

2. 중소기업 사업정리

1. 중소기업 사업정리
2. 사업정리 유의사항
3. 사업정리 컨설팅
4. 법인기업 파산 제도
5. 중소벤처기업 자산거래 중개장터



01

중소기업 사업정리

사업정리란?

- **정의** 중소기업 폐업 시 필요한 행정처리* 및 잔존요소**를 처리를 하는 것
 - * 신고(폐업, 부가세, 법인세 등), 지급명세서 제출, 4대 보험 탈퇴 등
 - ** 채무(상거래, 금융, 조세 등), 유효자산(설비,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 **유형** M&A와 같은 양도형 사업정리와 폐업 또는 법인 해산 같은 해체형 사업정리가 있음

유형	제반절차	비고
양도형 사업 정리	• M&A, 자산매각 등	• 영업이나 자산이 환가 가능한 가치가 있을 때 • 사업정리 초기에 시도
해체형 사업 정리	• 폐업신고(국세청) • 청산 혹은 파산 절차 후 법인해산 등기(법원)	• 양도형 사업정리가 불가능할 때 (청산절차) 자산 > 부채 (파산절차) 자산 < 부채

사업정리 애로요인

- **소요기간 장기화** 회사정리 기간의 장기화(평균 8.6개월)로 인해 재도전까지 길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전문가** 회사정리 과정에서 이용한 자문서비스에 대해서 실효성과 경제성* 모두 만족도가 낮은 상태
 - * 회사정리과정에서 각종 자문, 파산비용 등 평균 6천만원 소요

사업정리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사업정리 前 전문가와의 심층상담은 필수 !!!

사업정리 하기 전 세금, 노무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사업정리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향후 재도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뿐 아니라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음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사업정리컨설팅 이용

- 어렵다고 사업정리만이 최선일까요?

기업이 처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회생절차나 구조개선을 통한 위기 극복도 가능
⇒ 진로제시컨설팅, 구조개선전용자금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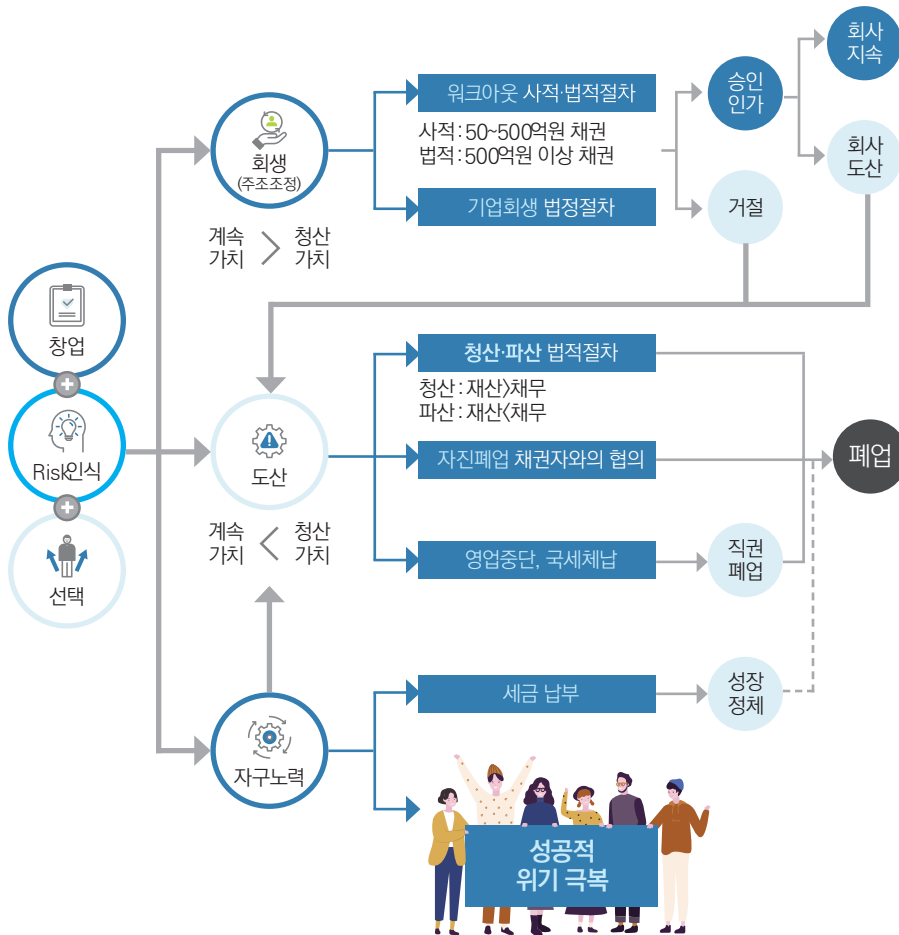


폐업 시 행정처리

- 폐업 신고
 - 면허 또는 허가증 있는 사업의 경우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됨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폐업한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를 누락 시 無신고가산세가 부과됨
- 법인세(소득세) 신고
 - 매출액에 추계로 과세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
-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와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를 부담함
- 4대 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
 -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4대 보험을 계속 부담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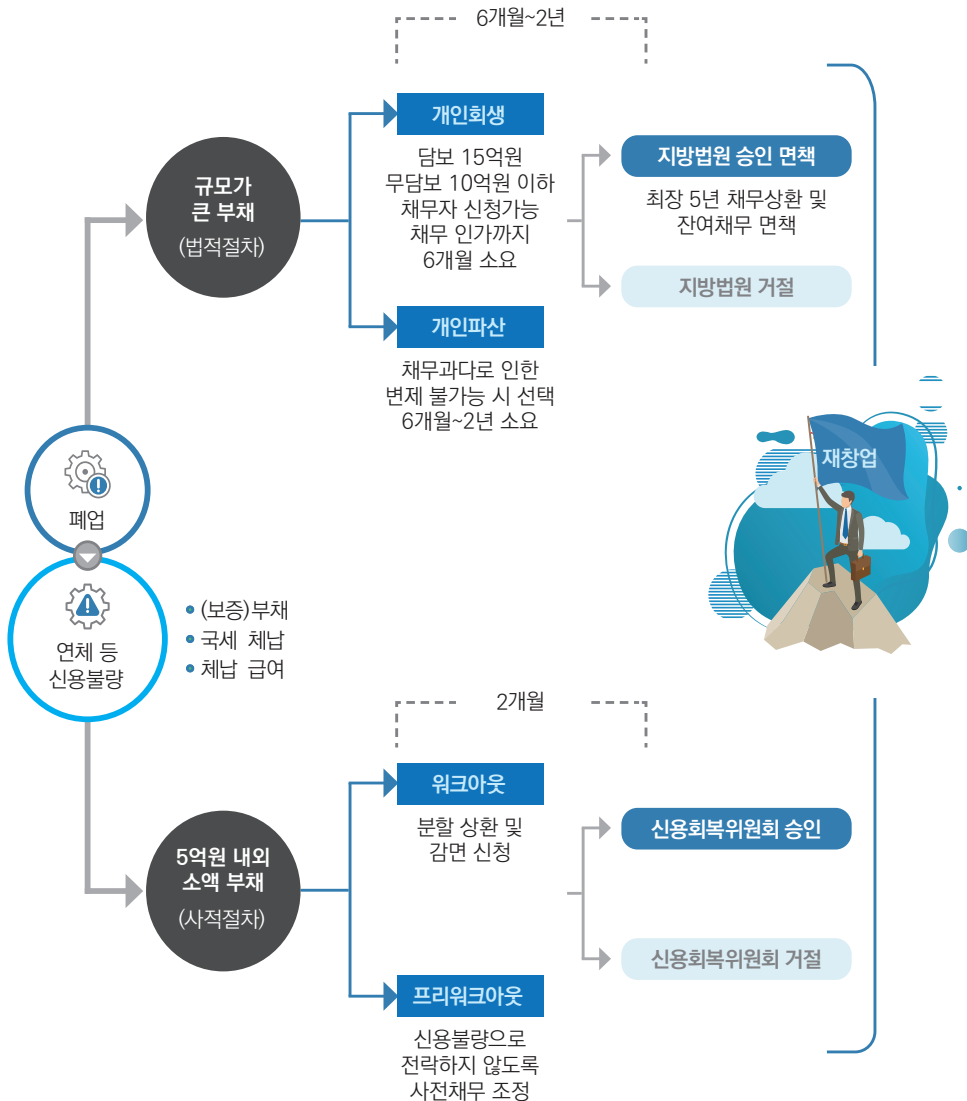


법인 폐업 프로세스개인(신용회복) 재도전 프로세스 I



Risk : 매출급락, 시장불안, 은행독촉, 부도 경고 등

법인 폐업 프로세스개인(신용회복) 재도전 프로세스 II



- 변제계획 인가 및 면책 결정 후 5년간 한국신용정보원 DATA 관리
- 모든 면책에서 조세는 제외



02

사업정리 유의사항

사업정리 전 상담

- 위험을 최소화하고 재도전의 소요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정리 전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사업정리컨설팅을 이용

유의사항

- **사업정리 전에 경영위기에 닥쳤을 때 국세 징수유예 신청**
 - 기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국세 납부기한이 되기 전에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9개월까지 징수유예가 가능
 - 그러나, 국세 납부기한이 지나고 독촉기간(최대 1개월)내 체납상태에서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승인도 까다롭고, 증가산금만 면제됨
- **국세의 부과와 소멸**
 - 법원 파산·면책을 받더라도 국세는 감면이 안 되고, 체납세금에 대해 가산금 3%와 함께 매월 1.2%씩 연 14.4%로 최대 5년간 추가 가산금이 부과됨
 - * (예시) 5천만원 5년 체납 시 가산금 3,750만원($5,000 \times 75\%$)
 - * '19년부터 체납가산금은 1개월 경과시 매월 0.75%(연 9.0%)로 인하
 - 체납세금이 5년(5억원이상 10년)이 경과되면 징수할 수 없으나, 세무당국에서 5년 이내에 재산압류를 하거나 독촉할 경우에는 국세 소멸기간이 다시 시작하며, 재산이 압류될 경우에는 국세 소멸시효는 중단됨
- **과점 주주의 제2차 납세의 의무**
 -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한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과점주주*는 법인이 체납한 세금에 과점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만큼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 * 법인의 주주 본인과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친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자
- **소득세(법인세)의 신고 누락 시 문제**
 - 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을 할 경우, 매출액과 이익을 추정하여 소득세(법인세)를 부과
 - 폐업 시에도 매출액이 발생했다면 신고기한 내에 매출액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폐업 청산 시 부동산 경매**
 - 법원 파산으로 인한 양도 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를 제외하고, 부동산 경매 등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함
 - 빚을 정리한 후 본인에게 돌아온 금액이 없다가하여 양도소득세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됨



- 대표이사 가지급금

- 회계장부상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로 폐업하게 되면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법인에 상환해야함

* 법인에서 현금이 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어 회계상 일시적 비용으로 처리한 회계계정

- 폐업 시 재고자산

- 폐업 시 회계장부상 재고자산이나 집기비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해야함
- 회계장부상 잔존자산을 폐기하거나 매각 손실 처리하여 폐업하는 것이 바람직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사업정리컨설팅 ☎ 055-751-9624
- 세무·법률 상담 ☎ 02-3211-5611



03

사업정리 컨설팅

“

사업정리를 희망하는 기업에 폐업·파산 등에 대하여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여 합리적이고 신속한 사업정리를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정리 희망기업,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사업정리 판정기업

컨설팅 내용

- 사업정리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 * 각종신고 절차 안내 및 토지·건물 등 재고물품 처분 방법
- 재무·세무 컨설팅
 - * 부가세·법인세 등 행정절차 및 사업정리에 관한 절세 방법
- 법무·노무 컨설팅 및 계획 제시
 - * 채무 및 신용회복 방법, 임금 및 고용관계 정리 등 기업 상황에 맞는 사업정리 계획 제공

지원내용

- 컨설팅비용 지원(부가세는 기업부담)

신청기간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공고시

신청방법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 내 재기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신청(www.mssmiv.com)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24

04

법인가업 파산 제도

“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의 모든 재산을 매각하여
공평하게 채권자들에게 분배한 후 해산하는 법적 제도

”

신청자격

-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로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가업의 이사 또는 청산인
- * 법인가업의 모든 이사가 아닌 일부 이사만 파산 신청할 경우에는 파산원인의 사실을 소명해야 함

신청비용

- 부채총액 5억원 미만인 채무기업은 조사위원 보수 및 송달료 등 최소 500만원 소요
- * 채무기업의 부채 총액이 많을수록 조사위원 보수가 증가하여 신청비용도 같이 증가함

소요기간

- 파산신청 ~ 파산선고까지 약 1개월, 파산선고 ~ 종결까지 약 1년 소요

파산 효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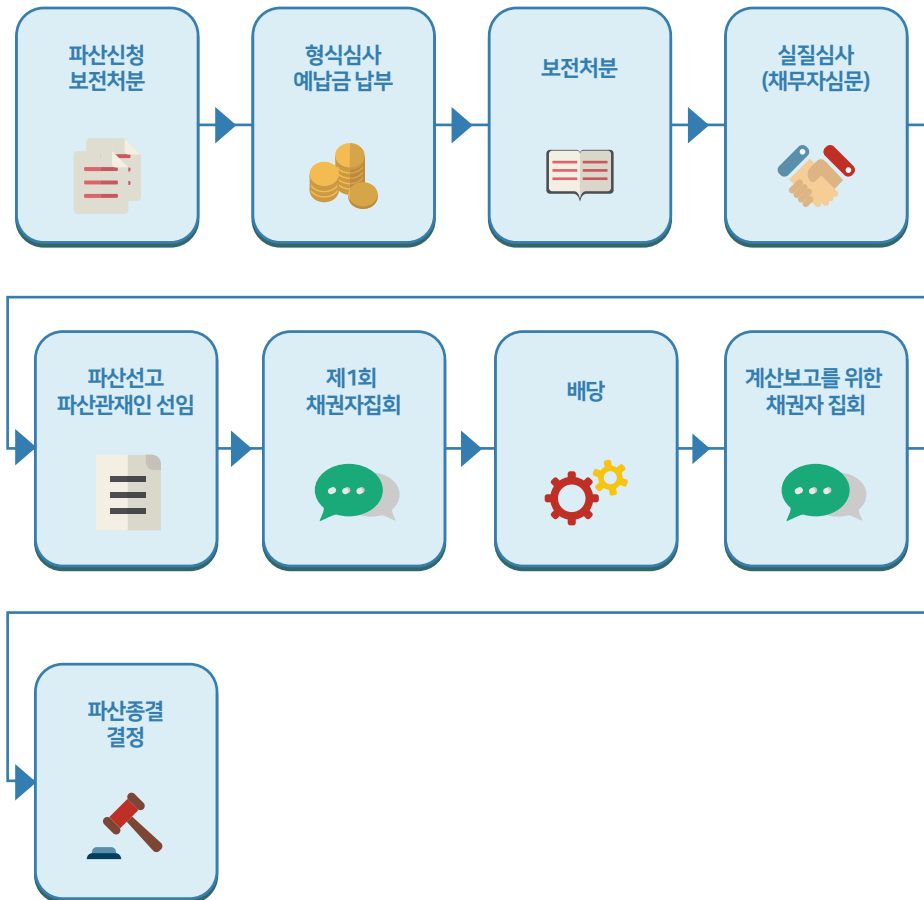
- 채무기업의 재산을 공정하게 매각·배당
- 법인은 파산·종결하면 해산하여 법인격이 소멸함

신청방법

- 신청인, 채무자, 신청 취지 등이 기재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
- * 회사 현황, 재무제표, 외부감사보고서, 자산·부채 현황 등



지원절차



- 파산선고 후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극히 적어 조세, 임금, 파산절차의 비용 등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파산절차 폐지

기업파산시 유의할 사항

- 파산절차 종결 또는 폐지와 함께 법인 해산으로 동일 법인으로 계속경영 불가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수도권, 강원 ☎ 02-3211-5611
 - 그 외 지역 ☎ 055-751-9624, 9627

05 중소벤처기업 자산거래 중개장터

“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전환 및 휴·폐업 시
보유자산의 신속한 매매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종합포털 사이트

”

주요대상

- 사업전환·회생·재창업·휴·폐업기업 등 유휴자산의 매매를 원하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 * 유휴자산: 중고 기계설비, 입찰경매 및 이전·대여 매물, 유통매물

지원내용

- 유휴자산의 매각·매입 물건 정보 제공
- 입찰정보 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 ZEUS 장비활용포털, 한국기계거래소 등)
- 직거래, 입찰경매, 대여를 통하여 매입자 간 자율 거래 진행
- 신청을 통해 매각 희망 자산을 신문지면 상에 무료 광고 및 안내

이용기간

- 연중 상시

지원절차



이용

- 중소기업 자산거래중개장터 홈페이지 (www.joonggomall.or.kr)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조혁신처 ☎ 055-751-9705

2024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제도

발행일	2024년 4월
펴낸곳	퍼넌곳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www.rechallenge.or.kr 055-751-9628
주소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제작	-

※ 이 책의 저작권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